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
국회 제출 근거 신설 〉

■ 허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3901)

2023.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 국회 제출 근거 신설 (안 제25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허은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3. 8. 21.

다. 회 부 일 : 2023.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며, 헌법재판소도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인정한 바 있음.

그런데 심의 기준이나 심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내부 점검이나 외부 보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심의의 공정성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안전 심의와 관련된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 국회 제출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 신설)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회의의 안건 심의와 관련된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2(회의자료 및 회의록의 국회 제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회의(제22조제2항 각 호를 포함한다)의 안건 심의와 관련된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토 의견

-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8조제1항1)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한 합의제 기관으로,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21조²⁾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심의, 과징금 및 제재조치 등에 관한 심의, 정보 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심의 등을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심의위원회 회의의 안전 심의와 관련된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송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최근 심의 기준이나 심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내부 점검이나 외부 보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에 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다음과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현재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있고 국회 자료 요청 시에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 개정안에 따라 비공개 회의 사항(동법 제22조제2항 각 호)을 제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관련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보장하는 비공개 사유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 특히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및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 회의의 경우, 개인 사생활, 개인정보 및 명예훼손성 내용과 관련된 정보가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 제출 시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현행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 22조제2항³⁾은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되,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개하면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회의 등)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법인 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 회의
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소위원회에 관해서는 법 제22조제7항 및 법 시행령 제10
조제4항에 근거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3조제3항4)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
으로 하되,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규칙 제5조5)에 따라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자료 일체를 제출하는 경우 불법정
보 URL·명예훼손 내용의 공개, 개인 사생활·인격권 침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는 점,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법 제
22조제2항 각 호6)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 제출시 국가안전보장,

4)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회의 등)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회의록) ①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회의 등)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

개인·법인·단체의 명예훼손 또는 정당한 법익, 공정한 업무 수행(감사·인사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 입장임.

- 한편 국회에 연례적인 자료 제출을 규정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통상 업무계획이나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연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다수이고,⁷⁾

그 밖에 정부 법률안 제출 계획의 통지(「국회법」 제5조의3),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 등의 제출(「국가재정법」 제3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등이 있으나,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을 연례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입법례는 찾기 어려움.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

려가 있는 경우

- 7)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연차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중장기투자전략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기본법」 제67조(연차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연차보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연차 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비공개 정보를 제출하게 될 경우 개인·법인 등의 명예훼손이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 등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 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226